

어머님의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현황

기관명	어머님의집		
대 표	정선숙, 한문태	이용정원	20명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134-2, 134-11		
규 모	대지: 846㎡	건물 : 457.2㎡	주차장 2대 : 25㎡
시설설립	2025년 4월 1일	전화번호	042) 522-8968
		FAX	042) 538-8968

2. 직원현황

총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14	1	1	1	10	1

3. 입소자 비용 수납기준 (1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원	83,910원	79,240원
	본인부담금	일반 20%	18,090원	16,780원	15,840원
		경감 12%	10,850원	10,060원	9,500원
		경감 8%	7,230원	6,710원	6,330원
비급여	식재료비 (1식)		3,000원		

4. 보험가입 현황

상품명	보장기간
업무배상책임보험	2025년 3월 31일 ~ 2026년 3월 31일
영업배상책임보험	2025년 3월 31일 ~ 2026년 3월 31일
하이기업종합플러스보험	2025년 3월 31일 ~ 2026년 3월 31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2025년 4월 16일 ~ 2026년 4월 16일

5.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입소 모집 방법

시설의 입소 대상자 모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co.kr에 시설정보 공개를 통해 모집한다

(2)입소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2)입소절차

시설의 입소는 입소대상자나 그 부양 의무자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설의 입소 비용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입소를 결정한다.

(3)입소계약 제출 서류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입소 당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①장기요양급여계약서
-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③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④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⑤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 ⑥감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서

(4)계약기간

입소 당사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과 같이 한다.

(5)비용 수납 세부기준

- ①입소 당사자의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산정한다.
- ②입소 당사자가 외박을 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고,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 ③월 2회 계약의 진료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입소 당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비급여대상인 식재료비는 1일 3식으로 끼니당 3,000원으로 산정하며 입소 당사자의 실제 식사 유무로 계산한다.
- ⑤입소 당사자의 병원치료 및 처치, 약처방 등 관계되는 비용은 입소 당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시설이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어머님의 집(이하 시설)이 입소자들에게 제공할 각종 서비스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하여 입소자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노인복지법 제35조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1항관련 별표4번에 따라 입소정원을 시설의 건축면적 482.2㎡으로 정원 20명으로 한다.

②모집방법은 입소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co.kr에 시설정보 공개를 통해 모집한다.

제3조 (계약자,당사자,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 개인 청결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1.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

2. 분실, 파손, 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지지 않을 권리

3.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의 소지를 거부할 권리

⑤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간호관리와 투약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6.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시설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관리와 투약에 관해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설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입소자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5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제6조 (강제퇴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를 강제퇴소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월 산출된 비용을 5회 이상 납입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4. 입소계약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제7조 (이용료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이 감경되었을 경우
4.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변동 되었을 경우

제8조 (이용료 변경 절차) ①본인일부부담금은 입소자의 등급갱신 조사 후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한다.

②계약기간 중 입소규정의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발송 안내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보호자는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계약기간 중 입소규정의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안내장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보호자는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물가의 변동으로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변동 되었을 경우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공지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보호자는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9조 (서비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 ①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 ②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③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 ④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10조 (서비스의 비용부담) 시설은 입소자에게 제15조 각 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8조 제9조에 의거한 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11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전염병, 임종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별서비스 기준

가. 법정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나. 임종의 경우

다. 정신질환으로 시설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12조 (특별한 보호 비용) 특별한 보호에 따른 발생하지 않는다.

제13조 (의료서비스) 시설은 각 호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①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의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계약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는 한 달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계약의는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외래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입소자의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 진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이나 계약의 소견으로 병원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 발생하는 의료비는 별도로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14조 (사용상의 주의)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으며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 (배상책임) ①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영업배상 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②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입소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시설 내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②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